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964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신혼부부 대상 혼인장려금 지급 및 신용카드 공제한도 상향 (한병도의원안)	2

I. 개요

1.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96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9. 12.
- (3) 회 부 일 : 2024. 9.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처음으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2년에는 19만 1,690건을 기록하였음.

이와 같은 혼인율의 하락은 저출생 추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 되는 혼인건수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장려금을 지급하고,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 104조의34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신혼부부 대상 혼인장려금 지급 및 신용카드 공제한도 상향 (한병도의원안)

현행	개정안												
☐ <신 설>	☐ 신혼부부 대상 혼인장려금 지급 (안 제104조의34 신설) ○ 신청자격: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간 총소득 합계액 2억원 미만인 거주자 및 배우자(단, 외국인은 제외) ○ 지급액: 100만원 ○ 신청시기: 혼인한 날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월) (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혼인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일시 상향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td><td>40% (50%)</td></tr> <tr> <td>-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td><td>40% (80%)</td></tr> <tr> <td>- 도서·신문·공연 ·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td><td>30% (40%)</td></tr> <tr> <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 <tr> <td>- 신용카드</td><td>15%</td></tr> </tbody> </table>	구분	공제율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도서·신문·공연 ·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4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구분	공제율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도서·신문·공연 ·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4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현행				개정안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 공제한도				○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공제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	250	기본공제 한도		500	4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대중교통		
	도서 등		해당없음		도서 등		해당없음
	24년 소비증가분		100		24년 소비증가분		100

* 한병도의원안 2024. 9. 12. 제출(의안번호 3964)

□ 개정안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자에게 혼인한 날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에 100만원에 상당하는 혼인장려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5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또는 2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만큼 일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통계청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 최초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3년에는 19만 3,657건을 기록하였음.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 역시 혼인건수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6년 5.5건에서 2023년 3.8건으로 약 31% 감소하였음.

[연도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단위: 건, 천명당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잠정)
혼인건수	281,635	264,455	257,622	239,159	213,502	192,507	191,690	193,657
조혼인율	5.5	5.2	5.0	4.7	4.2	3.8	3.7	3.8

주: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함.

자료: 「인구동향조사」,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이와 같은 혼인률의 하락은 저출생 추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약 40만 6,000명에서 2023년 23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천명, 가임여자 1명당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잠정)
출생아 수	406	358	327	303	272	261	249	230
합계출산율	1.17	1.05	0.98	0.92	0.84	0.81	0.78	0.72

자료: 「인구동향조사」,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 한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소비분에 대해 소비항목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써,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의 기본공제 한도가 적용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의 한도가 적용됨.

□ 개정안은 신혼부부에게 혼인한 해에 한하여 100만원의 혼인장려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혼인을 장려하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혼인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13세 이상 미혼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남녀 모두 결혼자금의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선택하였는데,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혼인비용을 일부 경감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3세 이상 미혼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2022년)]

(단위: %)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결혼자금(혼수 비용, 주거마련 등)이 부족해서	29.7	35.4	22.0
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11.0	13.4	7.7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6.6	4.7	9.1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10.7	9.3	12.5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11.6	11.3	11.9
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0.8	1.1	0.6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9.6	8.4	11.2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되어서	1.0	0.6	1.6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8.7	15.2	23.3

자료: 「사회조사」, 통계청(지표누리)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혼인장려금 지급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상향의

혼인율 제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 결혼정보 전문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른 2024년 우리나라 신혼 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은 2억 4,299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개정안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부부합산 최대 280만원 정도에 그쳐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미미할 수 있음¹⁾.

또한, 개정안에 따른 세제지원은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1회성으로 이루어지므로 장기적·계속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혼인의 결정에 있어 제도가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저출생 문제 해소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의 궁극적인 입법취지는 혼인율 제고를 통한 저출생 문제 해소인 반면 혼인과 출산을 독립적인 사안으로 인식하는 청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과반(53.5%)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1) 최고 소득세율 45%가 적용되는 구간을 가정하고 한도 상향금액인 200만원 전액 공제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은 부부합산 180만원이고, 혼인장려금 100만원을 합하더라도 총 280만원임.

[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중]

(단위: %)

구 분	2018년	2020년	2022년
전 체	30.5	32.0	34.7
청 년	46.4	50.5	53.5

자료: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통계청, 2023. 8. 28.

또한, 청년들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²⁾, 고용·소득 불안정과 아울러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족, 딩크(DINK: Double Income No Kids)족의 확산 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혼인에 대한 일회성 세제 지원 만으로는 최근의 비혼·저출생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힘든 상황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결혼을 망설임 이유 비중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사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결혼비용	46.4	65.8	53.2	51.4	41.9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12.5	9.1	8.6	13.9	12.6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 부족	18.8	9.2	16.4	12.9	25.2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13.7	9.1	11.8	12.3	18.2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7.5	6.3	8.5	9.5	1.2
기타	1.1	0.6	1.5	-	0.8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p.59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혼인장려금 지급제도를 비롯한 각종 결혼 지원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2) 청년(15세~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7년 46.7% → 2018년 47.1% → 2019년 47.8% → 2020년 46.4% → 2021년 47.9% → 2022년 49.8% → 2023년 49.4%로 나타나고 있음.(통계청,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비용 결혼 문화에 따른 결혼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이나 결혼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예식장소 무료 대관,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대상 무료 건강검진,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세제지원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는 혼인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³⁾을 참고하여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혼인장려금 역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규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한 제도인 반면, 혼인장려금은 매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닌 일회성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2. (생략)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문 의 처
02)6788-5154